

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통합환경허가시스템(<http://eps.nier.go.kr>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020. 11. 23.>

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15일(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)
------	------	-----	------	---

결정번호 제 호

신고인	상호(사업장 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	주소(사업장 소재지)	
	업종	주 생산품

신고 해당내역	사업장 종류	대기 중, 수질 중
	해당 배출시설등([]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, []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, []비산배출시설, []비산먼지 발생 사업, []소음·진동배출시설, []비점오염원, []폐수배출시설, []악취배출시설, []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, []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[]폐기물처리시설)	
	허가단계([]허가(최초), []허가(변경), []변경신고) 신고사유	

가동개시	가동개시 예정일			년 월 일			
	배출시설등			방지시설		시운전	
	배출시설등명	시설용량	1일평균 가동시간	방지시설명	용량	대상 여부	시운전기간

측정기기 부착완료 ([] 대기, [] 수질)	측정기기 부착완료일			년 월 일			
	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(예정일)			년 월 일			
	부착 내역	배출구 번호	측정항목	측정기기 모델명	측정방법	제조사	내역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검토 결과서 원본	수수료 5,000원
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